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인의 날(11월 1일) 법정기념일 신설〉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95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1.
3. 회부연월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상 매년 4월 10일로 지정된 ‘전기의 날’과 별도로,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법정기념일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생략) <u><신설></u>	제5조(전기의 날 및 전기인의 날)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기인의 공로를 기리고, 전기 분야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전기의 날</u> 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 <u>전기의 날 및 전기인의 날</u> ----- -----.
③ 제2항에 따른 <u>전기의 날</u> 기념행사에 필요한 <u>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제3항에</u> ----- <u>기념행사</u> ----- ---- <u>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u>은</u> -----.

현행 제5조1)는 국민에게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민간에 처음 전기가 점등된 날(190

1)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0년 4월 10일)을 기념해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반면, 대한전기협회 등 관련 협회와 종사자들은 이와 별도로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하여 자체적인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음.

[현행 '전기의 날'과 개정안의 '전기인의 날' 비교]

구 분	전기의 날 (현행법)	전기인의 날 (개정안)
일 자	매년 4월 10일	매년 11월 1일
지정 목적	전기의 소중함 홍보 및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전기인의 공로 치하 및 전기 분야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법적 근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제1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제2항 (신설 추진)

본 개정안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치러오던 행사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기존 법정기념일과의 중복성 및 국가기념일 지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행 법정기념일(전기의 날)과의 목적 중복성 및 행정·재정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위 표에 나타나듯, 현행법상 ‘전기의 날’ 지정 목적에 이미 “전기산

업인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가 명시되어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2)에 따라 정부는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기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두 기념일의 제정 목적과 공로자 치하 및 포상 등 주요 행사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동일한 법률 내에 별도의 법정기념일을 신설하여 행사를 연 2회 분리 개최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및 국가 재정의 중복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국가기념일 지정 기준 및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기념일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2에 따르면,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념일 지정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마목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그 밖에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본 개정안에 대하여 기존 기념일과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2024년에 제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기존 11개로 분산되어 있던 전기 관련 법률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전기업계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법'임.

따라서 1966년부터 전기업계가 공동으로 기념해 와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전기의 날(4월 10일)'로 기념일을 단일화하여 업계 전반이 참여하는 통합 행사로 운영하는 것이 통합과 체계성을 강조하는 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는 부처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